
2024년도 제29회 정기총회

일 시 : 2024. 2. 23.(금) 11:00

장 소 : 호텔리베라 3층 몽블랑홀



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
Korea Exhibition Culture Industry Cooperative

제29회 정기총회 식순

1. 개회 준비
2. 성원 보고
3. 개 회
4. 국민 의례
5. 개 회 사
6. 시 상
7. 정 회
8. 안건 심의
 - (1) 202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승인(안) 2
 - (2)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(안) 3
 - (3)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개정(안) 4
 - (4) 차입금 한도액 설정(안) 6
 - (5) 소액수의계약 추천에 대한 추천한도 설정(안) 7
 - (6) 소기업 공동사업제품추천에 대한 추천한도 설정(안) 8
 - (7) 이사회 위임(안) 9
 - (8) 조합원 제명(안) 10
9. 폐 회

제29회 정기총회 포상자 명단

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

제29회 정기총회 의안

한국전시문화산업협동조합

제안사유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202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(안)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 제안근거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
-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 제4호 및 제9호

 의결주문

첨부의 내용과 같이 202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(안)를 원안대로 의결 주문한다.

※ 첨부 : 2023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서(안) 1부.

제안사유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조합정관에 따라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(안)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임.

 제안근거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제3호
-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 제3호

 의결주문

첨부의 내용과 같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(안)을 원안대로 의결 주문한다.

※ 첨부 :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(안) 1부.

제안사유

규약의 개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조합 정관에 부합되도록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 제안근거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제2호
-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 제2호

 의결주문

붙임의 내용과 같이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개정(안)을 원안대로 의결 주문한다.

※ 붙임 :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개정(안) 대비표.

※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개정(안)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사유
<p>제10조(수수료와 사용료) ①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를 얻어 하향 조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공동구매수수료 : 2% 2. 공동판매수수료 : 3% 3. 단체수의계약 알선수수료 : 2% 4. 수출 또는 수입 추천수수료 : 2% 5. 수출 대행수수료 : 2% 6. 수출 알선수수료 : 2% 7. 검사수수료 : 0.5% 8. 공동운송수수료 : 실비 9. 공동시설사용료 : 실비 10. 수의계약 추천 또는 알선 수수료 : 2% 11. 공동상표관련 수수료 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동상표 사용료 : 계약금액의 2.5% <p><신설></p> <p>② 제1항 10호의 수수료 기본 금액은 예산액(조달 요청금액)을 기준으로 하며, 해당 수수료를 먼저 납부 하여야 추천한다.</p>	<p>제10조(수수료와 사용료) ① (현행과같음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~ 11. (현행과같음) <p>12. 단체표준 인증수수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수수료 : 150만원 - 인증심사원 출장비 : 5급 공무원 여비규정 - 인증심사원 수당 :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 <p>13.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추천 수수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계약금액(공급가)의 2% <p>14. 전시연출전문가 자격 검정수수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검정수수료 : 7만원(1,2,3급) - 교육수수료 : 실비 <p>② (현행과같음)</p>	<p>단체표준 인증 수수료 ·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추천 수수료 · 전시연출 전문가 자격검정 수수료 (응시료)</p> <p>정수근거 마련</p>
<p>제11조(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) 조합은 조합원이 회비 및 수수료, 사용료를 체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체납금의 납입이 있을 때까지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및 선거권, 조합시설의 이용, 조합사업의 참여, 각종 부대서비스의 제공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. 이 경우 조합은 제재결정 10일 전에 해당조합원에 제재 사유 및 조치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회비를 1년 이상 체납하는 경우 2.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해당사업 종료 후 또는 납부기일 경과 후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	<p>제11조(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제재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제재결정 2주일 전 -----</p> <p>-----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같음) 2. ----- <p>----- 3개월 이상 -----</p> <p>-----</p>	<p>정관 제33조 근거</p>

제안사유

차입금 한도액 설정은 총회 의결사항으로 자산건물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의 차입 시행 전 한도액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.

 제안근거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제11호
-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 제11호

 의결주문

차입금 한도액을 10억원으로 설정할 것을 의결 주문한다.

□ 제안사유

조합을 이용하여 1억원 이하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, 다수 조합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원별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제안근거
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
-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1조의2 제7항
-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 제12호

□ 의결주문

1억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추천은 조합원 1개 업체가 연간 추천 6회, 연간 계약 2억원 이하로 제한할 것을 의결 주문한다.

□ 제안사유

조합을 이용하여 소기업 공동사업제품(단체표준)을 체결하고자 할 때, 다수 조합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원별 연간 추천횟수와 계약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제안근거
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
-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 5호
-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3조 제6항
- 조합정관 제29조 제1항 제12호

□ 의결주문

소기업 공동사업제품(단체표준) 추천은 조합원 1개 업체가 연간 추천 24회, 연간 계약 한도를 40억원으로 제한할 것을 의결 주문한다.

□ 제안사유

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,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,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 이사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이사회에 위임하기 위해 총회에 상정하고자 함.

□ 제안근거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3항
- 조합정관 제29조 제2항

□ 의결주문

정관에서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, 매 사업연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변경,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,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등에 대하여는 업무 처리의 신속한 의사결정과 능률화를 위해 총회의 의결로 이사회에 위임할 것을 의결 주문한다.

□ 제안사유

조합의 기본회비를 장기간 또는 출자금을 초과해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정리하기 위하여 총회에 상정 하는 것임.

□ 제안근거
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1항 제6호
- 조합정관 제16조 및 제29조 제1항 제6호

□ 의결주문

조합정관 제16조 제1호에 의거 다음의 조합원을 제명할 것을 의결 주문한다.

*** 다 음 ***

2023년 12월 31일 기준

순번	회 사 명	대표자	조합가입일	출자금	미 납		차액
					월수	금액	
1	쥬디자인소암	편상연	2003.07.08.	2,700,000	75	2,260,000	440,000
2	쥬에이엠티	김정태	2004.10.18.	1,100,000	33	990,000	110,000
3	쥬아토디자인	구한솔	2018.11.07.	500,000	21	630,000	-130,000
합 계				4,300,000		3,880,000	420,000